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1 리베이트 관련 제재기준(쌍벌제 시행 전후비교)

- ①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 *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 ②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대상	제재종류	기 준('10.11.28. 전)	개 정('10.11.28. 이후)
수 수 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 면허자격정지 2개월 - 의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약사: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정지 구분 가. 벌금 2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 자격정지 12개월 나. 벌금 2천만원이상 2천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10개월 다. 벌금 1천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8개월 라. 벌금 1천만원이상 1천5백만원미만 : 자격정지 6개월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 자격정지 4개월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자격정지 2개월 - 의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시행('11.6.20) - 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2.13)
	형사처벌	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제 공 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이전과 동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리베이트 쌍벌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2 리베이트 조사(수사), 처분 관련 관계기관 역할

구분	역할
검찰·경찰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에 따른 수사 및 형사처벌
보건복지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에 따른 조사 및 수수자(의사 약사)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제공자(제약사)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및 제공자(제약사) 행정처분
관세청	「관세법」 등에 따른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 부정수입 조사 및 처벌
국세청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세무조사 및 추징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등에 따른 제공자(제약사 등) 행정처분
지자체	「약사법」 등에 따른 제공자(도매상 등) 행정처분

3 **처벌·처분기준 강화조치 검토 내용**

제재 강화 검토(안)	실행시 조치사항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 제공 금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 가중처분 적용 기간 연장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명단 공표 등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4 **리베이트 유형 및 단속 사례**

1. 일반 유형 및 단속사례

- 리베이트 유형
 - **(랜딩비, 의약품채택비)**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 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 **(매칭비, 처방사례비)**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 제공
 - **(할인·할증)** 수금할인, 매출할인, 할증 등

- **수금할인** :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수금
 - **매출할인** :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 **할 증** : 고객 유인수단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가해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추가 공급
 - **(스폰서비, 후원금)** 병원 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세미나·대회 등 각종 행사관련 비용 지원
 - **(각종 금품 지원 제공 및 뇌물 공여 등)** 이해정도에 따라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접대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
 - * 개설이나 이전 시, 체육대회, 야유회, 골프대회, 연말연시, 명절 등에 지원

○ 최근 단속사례(12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액 규모 최다사례)

수사대상	피의사실 요지	수사결과
A제약사 대표이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 및 약사 등 340여명에게 10억 2천 8백만원 상당 제공 ※ 쌍벌제 이후 5억 5천만원 상당 제공	구속기소
도매상B업체 대표이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BMW리스로 등 3,300만원 상당 제공	구약식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억 7천만원 상당 수수 ※ 쌍벌제 이후 2억 1천만원 상당 수수	구속기소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8천 6백만원 상당 수수 ※ 쌍벌제 이후 5천 6백만원 상당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BMW리스로 등 3,300만원 상당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사무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수수	불구속구공판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수수	구약식
의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수수	구약식

- 제약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하게 하고, **예상 처방액의 20~25%를 선급금으로 의사에게 지급**
- 영업사원들에게 의사와 리베이트 제공 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매월 의사의 처방액 확인, 처방액의 20~25%를 리베이트로 사후제공**
- BMW 등 **고급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의사에게 차량 제공하고 차량의 리스료 대납**,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 명의를 의사에게 이전해 주어 이익을 제공
- 제약사의 자회사인 도매상을 내세워 **주거래 대상인 소수의 병원을 집중관리하며 그 병원 앞의 소위 '문전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
→ 해당 병원이 L제약사 공급제품을 집중처방, 그 병원의 문전약국은 그 제품을 환자들에게 조제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판매망 확보**

2. 변형된 유형 및 단속사례

○ 리베이트 유형

- (시장조사, 광고비)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광고비'로 위장하여 리베이트 제공

- **시장조사(market research)**는 제약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나, 일부 제약사에서는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로 시장조사기관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별 처방액에 비례하여 형식적인 설문조사 후 대가 지급

-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의사를 처방액에 비례하여 리베이트 제공

-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

- (기타) 자사 의약품 처방내역 구입 대가로 정보이용료 형태로 의료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 제약사 계열사를 통해 의사에게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의 리베이트 제공 등

○ 최근 단속사례(11년,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수사대상	공 소 사 실	수사결과
C제약사 전무이사	'10. 3.~4. 공모하여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각 불구속 기소
D시장조사업체 대표		
E제약사 제약산업본부 팀장	'09. 5.~11. 공모하여 전국 219명의 의사에게 1페이지 분량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3만원씩 합계 3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각 약식기소
F시장조사업체 상무		